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& Health Services

# 차별대우 이의제기서

보낼 곳: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
HUMAN RESOURCES DIVISION
INVESTIGATION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UNIT (IRAU)
PO BOX 45830
OLYMPIA WA 98504-5830

음성: (360) 725-5807 또는 1-800-521-8060
TDD: (360) 586-4289 또는 1-800-521-8061
팩스: (360) 586-0500
이메일: iraucomplaints@dshs.wa.gov

| 이의제기자 성명 | 전화번호 1. 직장 2. 자택(기입여부 자유) 1. 2. |
|---|---|
| 주소 / 도로 / 시 / 주 / 우편번호 | |
| 차별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| 전화번호 |
| 기관명/지역번호 / 시 / 주 / 우편번호 | |

차별대우 관련 사례:
- ☐ 고용
- ☐ 서비스

근거:
- ☐ 피부색
- ☐ 장애
- ☐ 국적
- ☐ 보복
- ☐ 인종
- ☐ 종교
- ☐ 성적지향
- ☐ 인도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
- ☐ 나이
- ☐ 신념
- ☐ 월남전 참전 재향군인
- ☐ 최근의 퇴역 재향군인 여부
- ☐ 성별
- ☐ 혼인여부
- ☐ 장애 재향군인
- ☐ 기타 보호 재향군인 여부

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위와 날짜를 기입하십시오(필요할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십시오).

| 서명 | 날짜 |
|---|---|

PLACE STAMP HERE

WASHINGTON STATE DEPT. OF SOCIAL AND HLTH SVS
HUMAN RESOURCES DIVISION
INVESTIGATIONS UNIT SUPERVISOR/GRIEVANCE COORD
PO BOX 45830
OLYMPIA WA 98504-5830

# 무차별 정책

## 내용 설명:

- 무차별, 기회균등에 대한 보건사회부(DSHS)의 정책 및 차별대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
- DSHS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

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& Health Services
인적자원부 조사과(IU)

DSHS 22-171 KO (Rev. 4/11)

## 정책

DSHS의 정책으로써 **(채용 및 서비스에 해당)** 인종, 피부색, 신념, 종교, 국적, 성적지향, 연령, 성별, 감각기관, 정신 혹은 신체장애 여부, 장애인의 안내견 사용 혹은 동물(개) 서비스 사용여부, 장애 재향군인 여부 또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여부, 최근의 퇴역 여부 또는 기타 보호 재향군인 여부 및 **(채용에만 해당)** 혼인여부 등을 상대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.

서비스 또는 채용에 있어 상기에 언급된 요인에 근거해 불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은 DSHS의 무차별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 무차별 정책에 위반되는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서비스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
- 고용 또는 승진을 거부하는 경우
- 미국 수화(ASL)를 비롯하여 해당 언어 통역관 서비스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
- 건물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
- 적절한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자가 모든 프로그램, 활동 및 서비스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을 경우
- 컨설턴트, 자원봉사 또는 위원회나 임원회 역임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

## 무차별 계획

DSHS의 무차별 계획(Nondiscrimination Plan)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DSHS의 공식 정책과 공약에 반영합니다. 본 계획은 DSH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, 채용 그리고 연방정부가 원조하는 DSHS의 모든 부속 기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도 적용됩니다.

DSHS의 무차별 계획은 1972년에 개정된 1964년의 민권법 Titles VI 및 VII; 대통령 명령 제 11250호; 개정된 1973년의 사회복귀법 제 503, 504조, 1967년 연령차별법; 개정된 1974년의 월남 재향군인 재조정 원조법; 1990년의 장애자법; 1991년의 민권법; 차별대우 반대에 의한 워싱턴주법 RCW 49.60; 확약조치법 RCW 49.74 및 워싱턴주지사 명령 제 89.01, 93-07 그리고 96-04호와 일치합니다.

DSHS의 무차별계획 사본은 인적자원부, 조사과(IU)에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차별대우에 대한 이의제기

DSHS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 팜플렛 뒷면에 있는 차별대우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셔서 Investigations Unit (IU) Supervisor, Grievance Coordinator for Section 504, Title II 및 Other Civil Rights Laws, Human Resources Division, Investigations Unit(IU)으로 보내십시오.

앞서 언급한 요인에 근거한 차별대우 사례를 알고 계시면 IU로 연락하십시오.

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다음 대외기관(들)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- 워싱턴주 인권위원회(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: 1-800-233-3247
- 미보건복지 및 인적서비스부IU로 이의를 제기하여도 민권실(Office for Civil Rights)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미법무성(U.S. Department of Justice); 1-800-514-0301
-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(U.S.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); 1-800-669-3362
- 미농무성-식품 및 영양서비스(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, Food and Nutrition Services)(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시행 차별대우)

**보낼곳:**
USDA, Director of Civil Rights,
1400 Independence Avenue, S.W.,
Washington, D.C. 20250-9410
1-800-795-3272(음성)
202-720-6382(TTY)

IU로 이의를 제기한 후 앞에 기재된 대외기관에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할 경우 이의제기 허용기간은 그대로 적용 유지됩니다. 그러므로 대외기관으로 하는 이의제기 수용기간(일반적으로 180일기간)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기로 선택할 경우 IRAU에서 관할권을 채택하여 귀하에게 연락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와 사실 인정을 확인할 것입니다. 기밀성이 반드시 보장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기밀로 취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.

당국은 차별대우를 시정하고 교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## 보복행위

보복행위는 주법, 연방법 및 DSHS 정책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. 차별대우 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차별대우에 대한 이의제기 사례 조사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은 협박이나 위협, 강압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습니다.